

[별표 2]

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

세부심사기준	평가		비고
	적합	부적합	
1. 제공 서비스 구현의 적절성 및 혁신성			※ 판단기준 : 심 사 사 항 별 세 부 심 사 기 준 에 서 모 두 적 합 판 정 을 받 을 것
가. 제공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연계정보 생성·처리의 필요성			
나. 기존 유사 서비스와의 차별성			
2. 연계정보 생성·처리 절차의 적절성			
가. 관련 법령 및 내부규정에 따른 연계정보 생성·처리 절차의 적절성			
3. 연계정보 생성·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조치에 관한 계획의 적절성			
가) 본인확인업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·기술적·관리적 조치			
※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제1항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사항(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,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,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운영·보안 및 관리에 관한 사항, 이용자 보호 및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, 긴급상황 및 비상상태의 대응에 관한 사항, 본인확인업무를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, 대체수단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, 접속정보의 위조·변조 방지에 관한 사항) 등을 심사함			
나) 물리적·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총괄하는 책임자 지정 등 연계정보 생성·제공을 위한 내부 규정의 수립 및 시행			
※ 연계정보 생성·제공을 위한 내부규정에는 물리적·기술적·관리적 조치를 총괄하는 책임자, 실무자 지정 등 연계정보 관리를 위한 조직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, 연계정보 담당 인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, 연계정보 담당 인원 식별 및 최소화 준수, 연계정보 생성·처리·제공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활동 등이 포함되어야 함			
다) 연계정보 생성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통제			
※ 연계정보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 및 모듈에 대하여 정보시스템과 인원에 대한 접근통제 적용, 오프라인을 통한 연계정보 생성 시 연계정보를 생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모듈이 저장된 이동형 저장장치에 대한 보안 통제 수행 등이 조치되었는지 심사함			
라) 연계정보의 위조·변조 방지 조치			
※ 연계정보에 대한 위·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해시 체인 구성 등이 조치되었는지 심사함			

<p>마) 연계정보 생성·처리 사실 확인자료의 기록·보관</p>			
<p>※ 연계정보 생성과 관련된 기록은 최소 3년간 로그 형태로 보관, 연계정보 생성 및 제공 사실확인 요청 시 이를 처리할 담당부서와 업무절차 수립, 연계정보 생성·제공·이용·파기 항목 등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심사함</p>			
<p>4. 이용자 권리 보호방안의 적절성</p>			
<p>가. 연계정보 생성·처리의 정지 및 생성된 연계정보의 삭제 등 이용자 권리 보호 방안</p>			
<p>나. 이용자 불만 등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절차</p>			
<p>다. 이용자 피해 예방 및 안전성 확보 조치방안</p>			
<p>5. 관련 시장과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</p>			
<p>가. 관련 산업의 활성화 및 비용 절감 등 제공 서비스가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</p>			
<p>나. 이용 편의성 및 경제적 이익 등 제공 서비스가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</p>			